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5. . . (제 회)	

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장관)
제출연월일	202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단체가 발급한 인명구조에 관한 자격을 국가에서 발급하는 수상구조사 자격으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600호, 2024. 12. 20. 공포, 2025. 12. 21. 시행)됨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장에 배치되는 인명구조요원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0. 0. ~ 0. 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교육기관이 운영하는 인명구조”를 “별표 12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 중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기관”을 “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기관”으로, “관리·감독, 인명구조 교육과정의 운영”을 “관리·감독 및 교육과정”으로 한다.

1. 인명구조요원: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른 수상구조사

별표 1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명구조요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갖춘 사람은 제2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격증의 유효기간 내에서만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갖춘 사람 중 이 영 시행 당시 자격이 정지된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갱신한 경우에 한하여 제1항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별표 12]

래프팅가이드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제26조제1항 관련)

1. 설립 목적: 수상레저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기관·단체
2. 인력기준: 제26조제1항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또는 래프팅가이드 자격을 갖춘 사람 5명 이상을 둘 것
3. 시설기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모두 갖추는 것
 - 가. 강의실: 면적이 65제곱미터 이상일 것
 - 나. 수영장: 길이가 20미터 이상이고, 최저수심이 1미터 이상이며, 5개 이상의 레인을 갖추고 있을 것
4. 장비기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 장비를 갖추는 것

비고: 임대차 계약 등을 통해 시설 및 장비의 사용권을 확보하고, 그 사실을 서류로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 동안 해당 시설 및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의 자격기준 등) ① 법 제4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인명구조요원이나 래프팅가이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제26조(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의 자격기준 등) ① ----- ----- ----- -----.
1. 인명구조요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u>별표 12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 중 해양경찰청장이 교육기관으로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이 조 및 별표 12에서 “교육기관”이라 한다)가 운영하는 인명구조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u> 나.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른 수상구조사	1. 인명구조요원: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른 수상구조사
2. 래프팅가이드: <u>교육기관이 운영하는 인명구조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래프팅가이드 자격</u>	2. ----- <u>별표 12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 중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u>

을 취득한 사람 ② <u>교육기관의 지정·지정취소, 관리·감독, 인명구조 교육과정의 운영</u>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 ⑥ (생략)	<u>는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u> -- ② <u>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기관</u> ----- <u>관리·감독 및 교육과정</u> ----- -----. ③ ~ ⑥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연 락 처	(032) 835 - 2352